

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서운기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

공익제보 보상금의 지급 시 보상대상 가액 대비 정률로서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고유의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,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을 준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, 보상금의 상한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 및 보상대상 가액의 100분의 30이내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
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